

■ 목 차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법인의 중국에서의 상표권 양도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의 중국 댐 건설 투자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의 중국 제조물 책임 분쟁 관련 자문.....	4
한국 법인과 중국 법인 간의 자동차 설계 계약 분쟁 관련 자문.....	4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의류 가공 계약 분쟁 소송.....	5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에 교육사업모델 관련 자문.....	5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지분양수도 관련 자문.....	6
[베트남] 포스코ICT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7
오토닉스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7
[라오스]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GDR 발행 및 싱가포르거래소 상장 자문.....	9
법무부를 대리하여 라오스 증권법 연구보고서 발간.....	10
[러시아] 국내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지역 내 기업 지분 인수 관련 자문.....	12
국내 기관을 대리하여 몽골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방안 관련 자문.....	12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지역 내 JV 참여 관련 자문.....	13
기획재정부 및 KDI가 추진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관련 자문.....	13
[일본]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일본 부동산 투자(약900억 원 규모) 관련 자문.....	15
한국 법인의 일본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현지 EPC계약 자문.....	15
일본 방문판매업체의 한국 내 이익상반거래 관련 자문.....	16
[미얀마] 보험회사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자문.....	17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 진출 관련 자문.....	17
칼라강판제조업 진출 관련 자문.....	18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 외국인투자 관련 획기적인 제도 시행.....	19
[베트남] 강제집행 제도 소개.....	2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의 경제적 및 법률적 환경 및 주의사항.....	24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29
국무원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 공표.....	29
「사회보험료신고납부관리규정」 제정.....	29
[베트남] 토지법 개정 예정.....	30
[캄보디아] 금융신탁업(Financial Trusts)에 대한 규제(재경부, 2013년 8월 26일).....	34
주거용 부동산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재경부, 2013년 10월 9일).....	34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35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 쿼터 확정.....	35
2018 FIFA 월드컵 지원에 관한 특별법.....	35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지원 확정.....	36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빠르면 2015년부터 야간거래시장 개설.....	37
일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국가전략특구를 위한 법제화 추진.....	37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법인의 중국에서의 상표권 양도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법인의 중국에서의 상표권 양도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댐 건설 투자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법인의 중국 댐 건설 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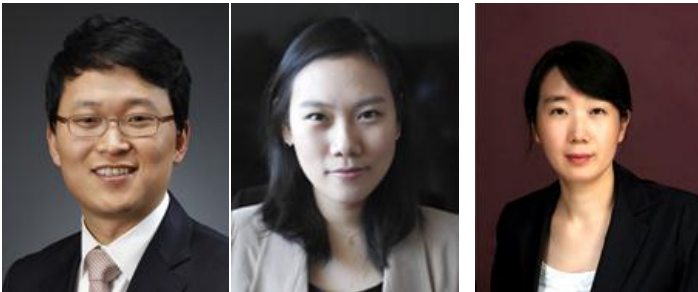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제조물 책임 분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법인의 중국 제조물 책임 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과 중국 법인 간의 자동차 설계 계약 분쟁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법인과 중국법인 간의 자동차 설계 계약 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임호 중국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의류 가공 계약 분쟁 소송

지평지성은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의류 가공 계약 분쟁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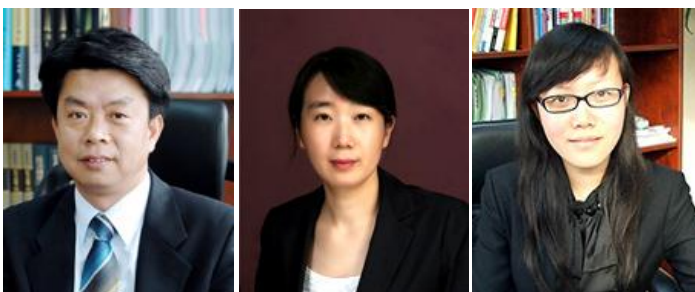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용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에 교육사업모델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에 교육사업모델 관련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김옥림 중국변호사

부용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 지분양수도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 지분양수도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부응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포스코ICT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포스코ICT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포스코ICT,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 한국경제(2013. 10. 1.)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오토닉스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산업용 센서 제조 전문 기업인 오토닉스를 대리하여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최규철 전문위원

■ 해외업무 사례 - 라오스 ■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GDR 발행 및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자문

지평지성은 라오스의 대표적 한상기업이자 최대 민간기업인 코라오디벨로핑의 지주회사인 코라오홀딩스를 대리하여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주식예탁증서(GDR) 발행 및 싱가포르거래소 2차 상장을 자문하였습니다.

코라오홀딩스는 기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금번 GDR 발행 및 싱가포르거래소 2차 상장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제 자본시장에도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코라오홀딩스, 1억 5천만 달러 GDR 발행 성공](#) - 파이낸셜뉴스(2013. 11. 11.)
- [코라오홀딩스, 1600억 규모 GDR 발행](#) - 머니투데이(2013. 11. 11.)
- [코라오홀딩스, 1590억원 규모 GDR 발행](#) - 조선일보(2013. 11. 11.)

[담당 전문가]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박경택 변호사



최정목 미국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법무부를 대리하여 라오스 증권법 연구보고서 발간

지평지성은 법무부를 대리하여 라오스 증권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책자는 법무부와 한국거래소가 2011년부터 공동 추진한 '법무 한류' 사업의 첫 성과로 '라오스 증권법'이 제정, 시행된 것을 기념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평지성과 손잡고 2년 6개월 동안 맞춤형 자문을 통해 라오스 증권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였고 올해 1월 증권법이 공포돼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무부, 라오스에 수출한 증권법 보고서 발간 - 머니투데이(2013. 11. 17.)
- 법무부, 라오스에 증권법 제정 첫 지원 - 서울신문(2013. 11. 18.)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국내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지역 내 기업 지분 인수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지역 내 기업 지분 인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내 기관을 대리하여 몽골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방안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기관을 대리하여 몽골 금융기관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지역 내 JV 참여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지역 내 JV 참여 관련 법률자문 제공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기획재정부 및 KDI가 추진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기획재정부 및 KDI가 추진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대상: 러시아 연해주)의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일본 ■

현대증권을 대리하여 일본 부동산 투자(약900억 원 규모)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현대증권의 일본 동경도내 상업용 건물 투자와 관련하여 초기부터 구입 완료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기사]

- [현대증권, 일본 쇼핑몰 900억원에 인수](#) - 서울경제(2013. 11. 12.)
- [현대증권, 日쇼핑몰 900억에 인수](#) - 한국경제(2013. 11. 13.)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김홍영 전문위원

한국 법인의 일본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현지 EPC계약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의 대형 IT &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이 투자하는 일본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EPC계약 체결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이훈 미국변호사



김홍영 전문위원

일본 방문판매업체의 한국 내 이익상반거래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일본의 방문판매업체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상반거래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형삼 변호사



이민희 변호사



김홍영 전문위원

■ 해외업무 사례 - 미얀마 ■

보험회사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미얀마 내 대표사무소 설립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삼성생명, 미얀마 사무소 개소](#) - 내일신문(2013. 11. 4.)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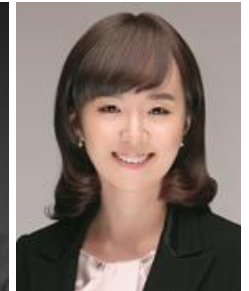
유정훈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 진출 관련 자문

라오스의 대표적 한상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에서 자동차 판매 및 정비업을 목적으로 한 합작투자 구조 및 영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미얀마에 첫발 디딘 현대차](#) - 매일경제(2013. 11. 4.)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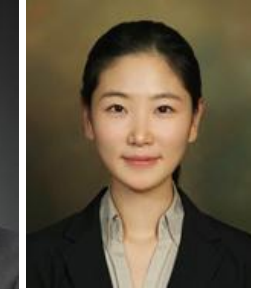
유정훈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칼라강판제조업 진출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기업을 대리하여 미얀마 내에서 미얀마 국영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한 칼라강판제조업 진출 및 미얀마투자위원회 투자승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포스코강판, 미얀마 진출 - 매일신문(2013. 10. 8.)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정철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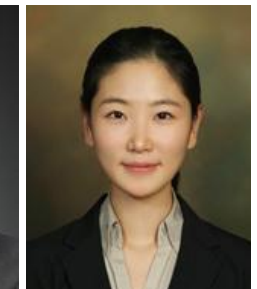
유정훈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고세훈 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 외국인투자 관련 획기적인 제도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부응 중국변호사)

2013년 9월 18일, 중국 정부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이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상해 자유무역시범지역(이하 '자유무역구')은 올해 8월 22일에 국무원으로부터 설립 인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9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총체적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이 시행됩니다.

일부 업종에 대하여 주주 자격요건 또는 지분율 제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수위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경우, 100% 외자은행의 주주에 대한 요건을 기존의 외국은행으로부터 외국금융기관으로 완화하여 진출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항공서비스업 중 국제선박관리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중국업체와 합작하여야만 하였지만 '총체적 방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전면 취소하여 외국인이 100% 투자하여 국제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한 중국업체와의 합작 제한을 취소하여 100% 지분의 의료기관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체적 방안' 중 외국인투자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조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清單)' 제도란 외국인투자과 관련하여 국민대우를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을 리스트화하여 명시하고 해당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서는 현재의 외국인투자 인허가절차를 신고절차로 전환하여 중국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비록

외국인투자자와 관련하여 자유무역구 외의 지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도 제한류, 금지류 구분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명시적으로 제한류와 금지류로 구분된 항목 외에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 인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투자를 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대중국 투자 시 항상 '인허가 리스크'가 제일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네거티브리스트' 제도의 시행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조치로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의 불안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구의 면적은 28km²로 상해시 면적의 1/226에 불과합니다. 비록 '좁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총체적 방안'에 따른 자유무역구의 운영은 1980년대 심천특구 설립에 버금가는 개혁개방 조치로 종종 비교되고 있는바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중국 전역의 외국투자관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강제집행 제도 소개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1. 강제집행 신청 기간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행기가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 이후였던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 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산합니다. 일정 기간마다 새로이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예: 할부금)에는 각 이행기 도래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채무마다 별개로 5년을 기산합니다(베트남 민사집행법 제30조).

2.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①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②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할 집행기관명, ③ 재판상의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름과 주소, ④ 강제집행 될 판결의 내용, ⑤ 재판상 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는 신청일을 명시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서명 혹은 날인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만약 강제집행 기관에서 신청자가 구두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신청자와 기록자의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2항).

신청서 기재 사항 중 ⑤ 재판상 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신청자가 적절한 수단을 취했음에도 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지 않아, 신청자가 미리 조사해 두지 않을 경우 집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3. 강제집행 기관

집행기관(Co quan thi hành án dân su;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ies)은 법원과 독립된 별도의 행정기구로 되어 있고, 구(區, 한국의 군 또는 구에 해당)급 집행기관(District-level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과 성(省, 한국의 도 또는 광역시에 해당)급 집행기관(Province-level civil judgment enforcement agency)으로 구분됩니다. 즉 모든 구(District)와 성(Province)에 각각 해당 심급의 강제집행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 조직이 구급 법원과 성급 법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구급 집행기관은 구급 법원이 1심인 사건의 판결과 그 항소심 판결 및 1심 관련된 재심 사건에 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 성급 집행기관은 성급 법원이 1심인 사건의 재심, 최고법원이 성급 집행기관으로 보낸 사건, 승인된 외국판결, 중재판정 등에 관한 집행을 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1항, 2항).

4. 강제집행 매각 금액의 배당

강제집행에 기한 경매 금액의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행 관련 비용 공제
- ② 위자료, 임금, 일실손해, 상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한 보상
- ③ 재판 비용
- ④ 등록된 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이들간에는 담보권의 대항력 우선 순위에 따름)
- ⑤ 기타 채권

만약 동일 순위에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민사집행법 제47조 1항).

5. 강제집행의 종료

- ① 재판상의 권리자나 의무자가 상속인 없이 죽은 경우
- ② 당사자 상호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한 경우
- ③ 재판이나 결정이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파기된 경우
- ④ 의무자가 법인인데 그 의무의 이전 없이 해산된 경우
- ⑤ 의무가 감면된 경우
- ⑥ 의무자가 파산한 경우

해당 종료 사유가 발생한지 5영업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장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0조).

■ 해외업무 논단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의 경제적 및 법률적 환경 및 주의사항¹



(법무법인 지평지성 권용숙 변호사 ·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기가 하락한 중에서도 2008년에 6.2%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래 2012년까지 평균 6.2%대의 견고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또는 포스트 브릭스(Post BRICs)라는 호평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그런 인도네시아가 2013년에 들어 재정 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임하는 소위 '쌍둥이' 적자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들어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되다 보니 그동안 장미빛 전망에 기대어 인도네시아 투자의 속도를 높여가던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발 빠르게 쏟아낸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보고서를 앞 다퉈 구해보며 인도네시아 진출 또는 후속 투자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필자는 인도네시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되고 따라서 당연히 알아 두어야 할 경제환경, 투자환경, 그리고 법 제도라고 생각해 오고 있던 것들 중 몇 가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려면 인도네시아 사회의 특색 7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약 400년에 이르는 식민지배의 경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자국민 보호 경향과 외국인에 대한 경계의식을 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¹ 본 글은 "함께하는 FTA" 2013년 11월호에 실린 동 저자의 기고문을 일부 수정 및 편집한 글입니다.

둘째, 화교들의 경제 패권을 들 수 있습니다. 화교가 경제권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화교를 상대할 경우 통상적인 인도네시아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관료집단은 100% 인도네시아 토속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도 자원부국 인도네시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보호주의 경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타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자체 기반이 취약하므로 투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양질의 노동력 부족, 부실한 인프라 등은 제조업 등의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넷째,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의 변화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동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쉽게 빈곤층으로 대표되는 민중들을 자극하는 경제개혁정책을 강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고, 자카르타 시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밀집한 공장 지역에는 노동자들의 데모가 빈번한데, 이는 결국 기업들의 노무관리상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들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구 2억 5,000만 명 중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인구는 10% 내외에 불과하며, 따라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라는 외형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중산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하는데, 극심한 빈부격차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계층 이동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여섯째, 문화적으로 낮은 교육열과 성취욕구 미흡도 생각해 볼 만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우며, 노무관리상으로도 성취욕이나 출세, 승진에 대한 생각보다는 단순 급여 비교로 쉽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노무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더운 나라의 전형적인 특징상 서민층으로부터 근면성이나 시간 엄수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공무원의 복지부동 및 법적 불확실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 문화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지화도 달성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시장 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한 7가지 특색 기타 인도네시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갖가지 기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결정 및 사업수행 전 과정에 있어 경영적인 관점 및 법적인 면에서 필자가 한국 기업에 대해 아쉬운 부분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인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요소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발전가능성, 내수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을 타겟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유통업, 모바일 콘텐츠 사업, 레스토랑 기타 서비스업의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과연 전체 인구의 몇 % 정도가 될 것이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산층이 얼마나 빨리 증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각종 컨설팅 업체를 통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질 구매력 인구 산정 시에도 대상 품목이 자동차, 휴대폰 등 고가품인지, 아니면 1~2달러에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업인지 등에 따라 달리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롯데마트 등 한국 대형마트 업체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의사 결정 시의 조급성 내지 단기성과 지향적인 경향도 한국 기업의 문제로 자주 지적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와 쉽게 대조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습성상 매우 느긋하므로,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에 있어서도 조급한 접근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파트너 측과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법률적인 조사 부분입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면서 기본적인 인도네시아 회사법에 대한 지식,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

총회 간의 역학관계,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충분한 지분이 주식 과반이면 충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실행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석탄에 관한 광업법 기타 각종 투자규정에 대한 사전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일수록 역설적으로 사전 법률검토가 필수적이며, 이를 토대로 불확실한 법 제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급한 의사결정으로 투자진행단계에서 다양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노무관리 부분은 극심한 빈부격차, 1998년 폭동 등 사회 구조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경영자 측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이 최저임금 협상, 유가보조금 인상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각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노동조합 차원에서 자카르타에 운집하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데,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사 간에 별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집회에 참가하는 등 노무 관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동집약적인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부정부패, 행정절차 지연 등도 누차 지적되는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조림사업, 은행, 증권, 보험 등 사업인허가권이 중앙부처 장관에게 집중된 경우, 또는 지방정부의 장으로부터 인허가 전제로서 추천서를 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인허가나 추천서를 득하는데 1년 또는 이와 버금가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감수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인허가권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으로 이관된 일반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서는 점차 인허가권을 관계부처에서 BKPM으로 이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무원들 또한 국회에서 부족하나마 통과시켜준 법률의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의 속도를 내지 않으며, 내부 행정규칙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투자 의사 결정 시 참고할 부분이라고는 담당 공무원의 구두 의견이나 실무 방침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기업들로서는 관련 부처 공무원과의 원

만한 소통관계를 평소에 유지하여야 하고, 아울러 한발 앞선 리스크 대응을 위해 현지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를 잘 활용할 필요성이 큼니다.

순수하게 법률적인 면에서 투자계약 작성 시 유의할 부분을 간단하게 2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로컬 파트너와의 주주 간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소매업 분야 등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로컬 파트너의 경우 일단 투자가 유치된 후에는 한국 측 파트너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로컬 파트너의 비협조는 세계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송 등 법적 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초기 계약 작성 때부터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작성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 투자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기관 및 준거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속도 및 공정성 면에서 세계 최하위 수준의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법원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권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포르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활용하기로 하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준거법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적으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부동산, 회사 운영 등 인도네시아 내국법에 따를 것이 강제된 경우에는 계약서상으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고자 할 경우 참고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 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에 의하면 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내구성 상품과 관련하여 상품 하자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경영자에게 분배하여 상품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경영자에게 하자상품 회수의무를 명시하였고 허위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광고회사, 광고게재사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국무원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 공표

지난 9월 18일, 국무원은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총체적 방안」(이하 '총체적 방안')을 발표하였다. '총체적 방안'은 서비스업의 확대와 개방, 외상투자관리체제에 대한 개혁, 자본종목의 환전, 금융 서비스업의 전면적인 개방 등의 다수 중요한 분야에 대한 개혁 내용을 두고 있다. 또한 '총체적 방안'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민대우를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를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負面清單)'를 작성하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된 항목 외의 분야에 대하여서는 현행 투자인허가제도로부터 투자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시행함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료신고납부관리규정」 제정

「사회보험료신고납부관리규정」(이하 '사회보험료신고규정')이 제정되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보험료신고규정'은 사회보험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사회보험기관은 관련 행정부서에 사업주의 예금계좌에 예치된 예금에서 체납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주의 계좌 내 잔금으로 체납한 사회보험료를 전액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저당, 질권 설정 등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토지법 개정 예정

베트남 국회는 이달 안에 새로운 토지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토지법 개정안은 2003년 공표된 현 토지법을 대체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적용 상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용어와 개념들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국유 및 토지사용권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토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용어 정의

“외국 단체 및 개인”이라는 용어는 토지사용자가 외교기관 또는 외교관 외에는 개정안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100% 외국인투자법인, 합작법인, 그리고 외국인투자자가 주식매매, 인수, 합병 등의 형식을 통해 투자한 국내기업을 뜻하는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s, 이하 ‘FIE’)”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토지사용권의 할당”이라는 용어와 “토지사용권의 임대”에 관한 정의도 추가되었습니다.

2. 토지사용권의 형식 수정

개정안에서는 FIE가 국내기업과 동일한 형태의 토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IE는 주택 매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FIE가 70년 동안 토지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FIE로부터 매입하는 현지인은 기간 제한 없이 토지사용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래 현지인이 국가로부터 임대를 할 경우 임대료를 연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시납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토지사용권의 취득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경매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더 많이 할당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 FIE와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 개시 전에 철거와 보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FIE가 국내기업, 해외거주 베트남인 및 공업단지 개발자로부터 토지를 전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결정 또는 수상의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나 관할 지방 인민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공업단지 및 신도시의 경우 외에는 국가가 사회·경제 발전을 이유로 수행하는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100% 투자한 FIE는 이러한 국가 주도의 토지정리 작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토지사용권 기간

내국인 개인과 가구에 할당된 농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기간은 최대 50년까지 연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현재 20년). 내국인 개인과 가구만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목적의 토지사용권을 할당받을 수 있게 되고, 법인은 더 이상 이러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토지사용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투자 프로젝트에 부여된 토지사용권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일반적으로 최대 50년, 특별한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70년). 매매 또는 임대용 주택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사용권의 기간은 개발자의 프로젝트 허가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토지사용권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약 토지사용자가 여전히 동일한 지역에 대한 토지사용을 희망하면 국가는 기간의 연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프로젝트 실행의 지연

현행 토지법상으로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권이 부여된 토지의 경우 프로젝트의 개시가 12개월 이상 연기되거나 프로젝트의 진행이 허가된 일정보다 24개월 이상 늦어졌을 때 국가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토지사용자가 연장된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국가

에 지불하고 프로젝트 개시일 또는 일정을 24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토지를 회수합니다.

6. 토지사용권의 담보 제공

외국 금융기관도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베트남에서 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금융기관만 부동산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 토지 가격

개정안은 5년마다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표준공시지가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매년 발표). 이와 별도로,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의 위치, 인프라 및 용도를 고려하여 특정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수수료, 행정벌과 보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

8. 매매를 위해 분할된 토지

개정안에는 주택 개발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긍정적으로 개정이 된다면, 현재 자금부족 상황에 부딪힌 다수의 개발자들과 구매자들을 위해 시장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공업단지의 토지

개정안에 따르면, 공업단지 개발자는 임대의 방식으로만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현재는 할당과 임대 모두 가능). 임대료 지급 방법(연납 또는 일시납)은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납 방식으로 할 경우, 개발자는 공단 입주자에게 토지를 전대하고 그 전대료를 연납 또는 일

시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납으로 할 경우, 개발자는 공단 입주자로부터 전대료를 연납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국가에 대한 임대료 지급 방식이 연납인지 일시납인지에 상관없이, 공단 입주자는 국가로부터 직접 토지를 임대한 임차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토지사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새로운 과세항목

개정안에 따르면, 벼농사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임대하거나 할당받는 토지사용자는 국가가 벼농사를 위한 대체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금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할당 또는 임대를 승인하거나 토지사용목적의 전환을 허용할 경우 국가가 임대료 또는 토지사용료에 추가하여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인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석유 기타 희귀 자원을 탐사·개발하는 업종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회사의 특성에 따라 32% 내지 5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첨단산업과 낙후지역 등 특별한 조세혜택을 받는 기업은 그 요건에 따라 10% 내지 2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금융신탁업(Financial Trusts)에 대한 규제(재경부, 2013년 8월 26일)

캄보디아 정부는 2013년 8월 26일 금융신탁업 규제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No. 476 on Financial Trusts)를 발표하여, 앞으로 위 시행령에 따라 캄보디아 재경부가 캄보디아 정부와 은행업 또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이하 '금융신탁업자')를 감독, 관리할 것임을 공표하였습니다. 위 시행령은 금융신탁업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에 따라 향후 캄보디아에서 금융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캄보디아 재경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존 금융신탁업자도 위 2013년 8월 26일부터 6개월 내 캄보디아 재경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판매업자에 대한 과세(재경부, 2013년 10월 9일)

캄보디아 국세청은, 캄보디아 재경부 부령(Circular No. 1728)에 따라 주택단지, 단독주택 및 빌라 등(이하 '주거용 부동산') 판매업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매수인으로부터 원래 받고자 했던 가격의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실제 매도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매달 실제 이루어진 거래의 매도가격의 1% 상당의 매출세를 세무당국에 선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일 주거용 부동산 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 세무당국에서는 해당 사업자의 실제 수익을 조사하여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표한 재경부령은 그간 주택분양사업에서 논란이 된 매출부가치세와 매출 선납세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재경부는 2009년도 12월 주택개발 및 판매업자에 대한 인허가 및 등록업무를 규정한 「주택개발관리에 대한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한국과 러시아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2013년 11월 13일 한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은 발효에 요구되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되며, 이에 따라 양국은 양국의 국내 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근로,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여권,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60일간** 무사증 입국·체류·출국·경유가 가능하나 180일 중 90일 초과는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1회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며, 각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90일입니다.

한편, 무사증으로 러시아에 입국한 경우일지라도 7일을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2006년 7월 18일, 최근 개정 2013년 6월 7일) 제20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2011년 법률 개정으로 3일에서 7일로 기간 연장됨).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 쿼터 확정

2013년 10월 31일 No.977 「외국인 근로자의 러시아 취업 수요 확정 및 2014년도 쿼터 확정에 관한 총리령」(이하 '총리령 제977호') 공포되었습니다. 총리령 제977호 제1조에 따르면 2014년도 외국인 쿼터의 총 규모는 1,631,586명입니다. 이중 회사(단체)의 관리자급 쿼터로 79,2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2018 FIFA 월드컵 지원에 관한 특별법

러시아는 「2018 FIFA 월드컵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연방법률」(No. 108-FZ, 제정 2013년 6월 7일)을 제정하여, 월드컵 준비를 위한 연방차원의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동 법에 따라 월드컵 준비를 위해 국가가 토지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보다 간명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지원 확정

러시아는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 이행 촉진과 관련한 러시아연방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No. 267-FZ, 2013년 9월 30일 제정)을 통해 러시아연방 세법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법에 의해 적용 받는 지역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 13개 주입니다. 동 법의 따른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 중의 하나로 투자금액이 5000만 루블(지역투자프로젝트 참여자 명부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과 5억 루블(지역투자프로젝트 참여자 명부에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라는 기준입니다. 동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투자프로젝트 참여자(법인)의 경우 연방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에 대한 세율을 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인화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2014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동경증권거래소, 빠르면 2015년부터 야간거래시장 개설

일본 동경증권거래소가 야간 거래시장 개설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야간거래시장 개설 요구가 높다면 2015년에 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거래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11시 30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시장을 야간에 거래할 수 있게 개장하면 일을 마친 직장인들이나 시차가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거래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야간에 시장을 개설하여 고객응대를 하게 되면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조사분석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터넷 증권사들은, 야간거래시장 개설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인터넷 증권사인 마쓰이증권은, 2003년과 2004년에도 이러한 요망서를 제출하였고, 이번에도 야간증권시장 개설을 요청하는 서류를 동경증권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경증권거래소는 2011년에도 거래시간 연장에 관해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야간시장개설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점심 휴장 시간을 축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동경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의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한 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 국가전략특구를 위한 법제화 추진

아베 정부의 성장전략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국가전략특구제도에 관한 법률이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세계 최첨단 비즈니스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대담한 규제 완화를 행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으로 고용, 의료, 교육, 농업분야 등 다방

면에 걸쳐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총리주도로 결정되어 정령에서 규정됩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분야	규제개혁항목
의료	외국인의사, 간호사 업무 허가, 병상규제 완화, 혼합진료 확충, 의학부 신설 등
고용	고용조건의 명확화, 유기고용규제 특례
교육	공설민영학교 허가
도시재생	도심거주축진을 위한 용적률완화, 임대주택의 숙박시설용도 변경 허가 등
농업	농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적용, 농지내의 레스토랑설치 용인 등